주요 판정사항 요약

본 분쟁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북동쪽 해안의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의 수입금지 및 추가 방사성 핵종 검사 및 증명서 요건 부여에 대한 것이다. 이 조치는 일본산 식품 수입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 2011년 일본산 제품에 대해 여러 수입규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응하였다. 이 조치로는 - 추후 특정 일본 현의 모든 수산품의 수입금지 (전면 수입금지)로 확대된 - 특정 일본 현에서 생산된 특정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일부 품목 금지)와 특정 일본상품에 대한 검사 및 증명서 요건이 있다.

초기 일부 품목 수입금지는 사고 이후 일본 국내에 시행된 제한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당국이 특정 현의 특정상품에 대한 국내 제한을 해제하기 시작하였으나, 한국의 수입규제는 유지되었다. 본 분쟁에서 일본은 한국이 2012년 시행한 일본 5개 현 (아오모리, 후쿠시마, 이바라키, 이와테, 미야기)의 대구와 후쿠시마 명태에 대한 일부 품목 수입금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2013년, 한국은 또한 다음 8개 현 에서 생산된 모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를 부여하였다: 아오모리, 지바, 후쿠시마, 군마, 이바라키, 이와테, 미야기, 도치기. 일본은 이 조치의 영향을 받는 수산물 중 28개 어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사고 이전, 한국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허용수준 이내의 세슘 혹은 요오드에 대한 무작위 통관검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사고 직후, 한국은 일본산 상품에 대해 특정 추가 검사요건을 시행하였다. 이는 특정 현 상품에 대한 수출 전 세슘 및 요오드 증명서 요구, 통관 시 모든 일본산 수입 선적물에 대한 세슘 및 요오드 검사, 그리고 비 수산물 및 축산물에서 소량의 세슘 혹은 요오드가 검출되었을 시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요건 부여가 포함된다. 2013년 기타 핵종 검사요건 (추가 검사요건)은 수산물로 확대되었다. 이 조치들 중, 일본은 추가검사요건에 대해 패널에 제소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수입금지와 추가 검사요건이 다음과 관련한 SPS협정 조항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차별성 (제2.3조),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적성 (제5.6조), 투명성 (제7조 및 부록 B), 및 SPS 승인절차 (제8조 및 부록 C). 일본은 패널에게 수입금지 및 추가 검사요건과 관련해 판정을 요청하였다:

a. 28개 어종에 대한 한국의 전면수입금지 및 추가 검사요건은 일본산 상품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며, 국제무역에 있어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기 때문에 2.3조와 합치하지 않음;
b. 조치가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므로 SPS협정 5.6조에 합치하지 않음;
c. 한국은 SPS협정 7조와 부록 B (1) 및 (3)의 투명성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한 한국의 조치 시행 발표가 SPS 협정 부록 B (1) 의 의무를 준수하는데 충분하지 않았으며, 2차례 일본의 문서 및 답변 요청에 대해 한국 문의처의 대응이 부록B (3) 에 따른 의무를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임;
d. 한국의 추가 검사요건은 SPS 협정 8조와 부록 C 1(a), 1(c), 1(e) 및 1(g) 와 합치하지 않음.

패널은 SPS 협정 1.1항과 부록 A(1)(b)의 의미 내에서 문제의 조치들이 SPS 조치임을 확인하고 한국이 이 조치들이 SPS 협정 5.7조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2011년, 2013년 추가 검사요건의 채택 및 유지와 관련하여, 한국이 SPS 협정 제8조와 부록 C에 따른 의무에 불합치한 것을 일본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한국의 2011년 추가 검사요건과 2012년 일부 품목 수입금지의 경우, 채택 당시에는 차별적이거나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2013년 추가 검사요건의 채택과 유지뿐만 아니라 이 조치들을 유지한 것은, SPS 협정 2.3조와 5.6조에 따른 한국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또한 한국이 모든 조치의 공표 및 SPS 문의처의 의무와 관련하여 SPS 협정 7조 및 부록 B에 따른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는데 실패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패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2011년 추가 검사요건 및 2012년 일부 품목 수입금지는 채택 당시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았다.

b. 2015년 9월 패널 설치 시점에서, 2011년 추가 검사요건 및 2012년 일부 품목 수입금지조치는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SPS 협정 5.6조에 불합치한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c. 2013년도 추가 검사요건은 당시와 현재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므로, SPS 협정 5.6조에 불합치한 방식으로 채택되었고 유지되었다.

d. 전면 수입금지(후쿠시마와 이바라키 대구에 대한 금지는 제외)는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었기 때문에 SPS 협정 5.6조와 합치하지 않은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e. 8개 현의 28개 어종과 관련한 전면 수입금지의 유지는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기 때문에 SPS 협정 5.6조와 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f. 일본이 주장하는 8개 현 27개 어종과 6개 현 대구(후쿠시마와 이바라키 대구 제외)와 관련하여 2013년 추가 검사요건 및 전면 수입금지는 한국이 채택할 당시, SPS 협정의 2.3조 첫 문장과 불합치하였으며 그 결과 2.3조 두 번째 문장에도 불합치하였다.

g. 8개 현 28개 어종에 대한 일부 품목 수입금지 및 전면수입금지, 일본산 상품에 대한 2011년과 2013년 추가 검사요건의 유지함으로서, 한국은 SPS 협정 2.3조의 첫 문장에 불합치하게 행동하였으며 그 결과 2.3조 두 번째 문장에도 불합치하였다.

h. 일본은 한국이 2011년 및 2013년 추가 검사요건의 채택과 유지와 관련하여 SPS 협정 부록C (1)의 (a), (c), (e), (g) 항과 결과적으로 제8조에 불합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i. 한국은 문제가 되는 모든 조치의 공표와 관련해, 부록 B(1)에 불합치하였으며 그 결과 SPS 협정 7조에도 불합치하였다.

j. 이전의 실패와 함께 일본의 모든 추가 질의에 대해 한국의 문의처가 응답하지 못한 점은, 한국이 부록 B (3)의 의무에 불합치하게 행동하였으며 그 결과 SPS 협정 7조와도 불합치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한다.